

2025년 제13회 2차 행정사실무법 이론회 행정사 총평

1. 2025 행정사실무법 전반에 대한 분석

1) 시험 난이도(상/중/하)

1문 물음1) - 상

1문 물음2) - 중

2문 - 하

3문 - 중

4문 - 하

2) 전체 총평

문제 난이도만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물론 시험이라는 환경 속에서는 항상 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 논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면 과거 기출 논점에서 대부분 출제 되었다는 점에서 차분히 시험에 임하셨다면 좋은 결과를 예상합니다.

2. 각 문제별 분석

1번 문제의 경우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종류와 가구제 수단이 물음 1의 논점이고, 인용 재결인 처분명령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처분과 간접강제가 물음 2의 논점입니다.

물음 1의 경우 의무이행심판과 임시처분을 결론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처분이 아닌 **부작위가 문제이므로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정지는 구제 수단이 아니며, 따라서 보충적 제도인 임시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물음2의 경우 처분명령재결은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칙적으로 직접처분과 간접강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보공개외의 경우 **정보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은 위원회는 성질상 직접 처분을 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간접강제만이 가능합니다.

2번 문제는 행정사의 업무신고에 관한 법조문을 작성하는 문제이며, 항상 중요하다고 강조되어 오던 논점입니다. 단순한 암기를 요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용이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문제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1항**에 대한 문제이며, 4번 문제는 직권주의가 적용되는 절차의 진행에서 송달의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일반론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기일의 통지, 공시송달**을 정리해서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모두 비송에서 강조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답안작성에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각 문항별 참고 문제

[문제 1 - 물음 1]

박문각 행정사실무법 실전 모의고사 9회 - 【문제 1】 물음1)

박문각 행정사실무법 실전 모의고사 4회 - 【문제 1】 물음1)

[문제 1 - 물음 2]

박문각 행정사실무법 실전 모의고사 3회 - 【문제 1】 물음2)

[문제 2]

박문각 행정사실무법 실전 모의고사 4회 - 【문제 4】

[문제 3]

박문각 행정사실무법 실전 모의고사 5회 - 【문제 3】

[문제 4]

박문각 행정사실무법 실전 모의고사 1회 - 【문제 2】

4. 수험 전략

행정심판 사례는 최근 들어서 기본 개념에 대한 부분을 논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점별 작성해야할 답안을 미리 준비하여 암기하는 것은 물론 기계적 암기가 아닌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자신이 아는 만큼의 답안 작성을 하기가 힘듭니다. 즉 기본이론 과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또한 판례를 변형한 문제가 출제되므로 판례에 대한 정확한 학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비송사건절차법은 올해도 총론 파트에서 2문제가 모두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총론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각론 부분은 주요 사건의 예외적인 절차만을 암기하는 방식의 공부가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총론 부분의 주요 논점들이 기출 문제로 반복되다 보니 앞으로는 과거 기출된 부분에 대하여 철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행정사법은 그 양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1문제씩 항상 출제되고 있습니다. 항상 법조문을 그대로 작성하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암기가 필요합니다.

2025년 제13회 2차 행정사실무법

【문제 1】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A공사회 공익사업 시행으로 甲은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되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甲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이주대책인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하였다. 관련 법령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 의무와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공사는 甲에게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 (40점)

(물음 1) 甲이 A공사의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고 있음' 을 다투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가구제 포함)을 설명하시오. (20점)

1. 문제의 소재

본 사안에서 신청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고 있음은 부작위에 해당한다.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은 행정심판의 청구와 가구제의 신청이 있다.

2. 행정심판의 유형

1)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취소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심판 그리고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이 있다.

2) 사안의 적용

본 사안의 경우 甲은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가구제

1) 집행정지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가 생길 경우에, 당사자의 권리·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제도이다.

2) 임시처분

임시처분이란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발하는 가구제 수단을 말한다.

임시처분은 소극적 현상 유지 기능만 있는 집행정지 제도의 한계를 해소하고 청구

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데 취지가 있으며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허용된다.

3) 사안의 적용

본 사안의 경우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이므로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정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부작위에 대하여 임시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4. 사안의 해결

甲은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구제 수단으로 임시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 문제]

박문각 행정사실무법 실전 모의고사 9회 - 【문제 1】

박문각 행정사실무법 실전 모의고사 4회 - 【문제 1】

(물음 2) 甲은 위 물음 1)의 행정심판과는 별개로 A공사를 상대로 '주택 특별공급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지만, A공사는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에 甲이 비공개결정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고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이행을 명하는 재결을 하였다 그러나 A공사는 위 재건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재결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심판법상 수단은 무엇인가? (20점)

1. 문제의 소재

의무이행행정심판의 결과 인용재결인 처분명령재결이 나온 경우, 행정청은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발생한다. 행정심판법은 이러한 인용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접처분과 간접강제를 규정하고 있다.

2. 직접처분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처분명령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간접강제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인용재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사안의 해결

정보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은 위원회는 성질상 직접처분을 행할 수 없으며, 간접강제로서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처분을 할 수는 없고 간접강제가 가능하다.

[참고 문제]

박문각 행정사실무법 실전 모의고사 3회 - 【문제 2】

【문제 2】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업무신고 및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1. 업무신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2. 업무신고의 기준

- 1)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2) 실무교육을 이수했을 것
- 3) 행정사 자격증이 있을 것
- 4)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

3. 업무신고의 수리거부

시장 등은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행정사 업무신고의 수리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수리간주

시장 등이 업무신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사 업무신고의 수리거부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행정사 업무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5. 이의신청

행정사 업무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사 업무신고의 수리거부에 대한 불복의 이유를 밝혀 시장 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장 등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6. 벌칙

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정사 업무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문제]

박문각 행정사실무법 실전 모의고사 4회 - 【문제 4】

【문제 3】 법원은 사법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甲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물음 1)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이 추후 위 과태료 재판을 취소·변경할 수 있는지 가부, 사유, 시기, 취소, 변경을 할 수 있는 법원을 설명하시오. (10점)

1. 취소·변경의 인정 여부와 그 사유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1항에서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명문으로 취소·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2.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변경의 인정 여부

재판 후에 사정변경에 의하여 원래 재판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게 된 경우에도 법원이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은 임시이사 선임사건에서 사정변경에 의한 비송재판의 취소·변경을 긍정하였으며, 그 적용 대상은 계속적 법률관계로 한다.

3. 취소·변경의 주체와 시기

1심법원은 항고심이 실제 재판하기 전까지 취소·변경할 수 있다.

(물음 2)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이 위 과태료 재판을 취소·변경한 경우의 효과와 취소·변경의 제한사유를 설명하시오. (10점)

1. 재판의 취소·변경의 효과

법원이 재판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면 취소·변경한 재판에 따라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진행 중인 항고심은 심판 대상이 소멸하여 종료한다. 이를 간과하고 재판을 한 경우 항고심은 무효이다. 재판이 일부 취소되어 나머지 부분이 존재한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항고심은 계속된다.

2. 취소·변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 1)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소·변경할 수 없다.
- 2)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취소·변경할 수 없다.

[참고 문제]

박문각 행정사실무법 실전 모의고사 5회 - 【문제 3】

【문제 4】 비송사건절차법상 송달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1. 직권주의에 의한 진행

기일의 지정 및 변경, 사실탐지 및 증거조사, 송달 등은 절차의 진행은 법원이 직권으로 수행한다. 신청사건이든 직권사건이든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진행한다.

2. 송달

1) 개념

당사자들에게 소송상의 서류의 내용을 알리는 법원의 통지행위이다.

2) 고지방식의 자유

비송사건절차법에서는 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송달의 의한 고지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재판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 자유로운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3) 예외

(1) 비송사건절차는 기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기일의 통지는 당해 사건으로 출석한 자가 아닌 한 송달에 의하여야 한다.

(2) 고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의 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참고 문제]

박문각 행정사실무법 실전 모의고사 1회 - 【문제 2】